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5 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 박상혁 • 박희승 • 이연희

정진욱 • 한민수 • 김원이

김주영 • 이해식 • 강선우

박홍근 • 염태영 • 한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김포도시철도(김포골드라인)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,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,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(이하 "혼잡도 대책"이라 한 다)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,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4조, 제22조 및 제41조의3).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「철도안전법」"을 "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철도안전법」"으로 한다.

제2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⑨ 정부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3(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등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,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
-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,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도시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<u>「철</u>	<u>이 법</u>
<u>도안전법」</u> 을 적용한다.	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	<u>「철도안전법」</u>
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⑦	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
	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도
	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
	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
	<u>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</u>
	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⑨ 정부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
	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
	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
	<u> 구축계획 및 「대도시권 광역</u>
	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
	3조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
	등 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ㆍ
	시행함에 있어 제41조의3제2항
	에 따른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
	<u>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</u>

<신 설>

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 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3(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등) ① 도시철도운 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,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
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,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 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, 혼 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